

재난 상황 대응 급여비용 산정기준 예외 적용 지침(2차)

- ▶ 동 지침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가 현행 기준*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적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지침
- *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▶ 주요내용

- (방문형 급여*)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임시 대피소 등을 가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

*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
- (입소형 급여*) 수급자가 전원조치된 경우 전원 받은 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,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관에 대하여 인정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

- (적용기간) 급여기준 예외 지침은 '25년 3월(급여 제공 시점 기준)부터 적용

□ 목적

- 수해, 산불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현행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재난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지침

1. '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' 의 특례

- (대상)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제공 기관
- (내용)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*으로 하나,
 - * (고시 제15조제1항)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임시 대피소 등을 가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문형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
- (제출서류)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임시대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1-1.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 업무

- (대상)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관
- (내용)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주 공간을 가정에 준하여 판단하므로,
 - 사회복지사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시 대피소 등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업무 수행 가능
- (예외) 고시 제5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*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
 - * 수급자 사망·입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, 월 중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

2. 전원 조치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주체

- (대상)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(A)과 수급자를 전원 받은 대피기관(B)
- (내용) 지자체의 수급자 전원조치계획 및 승인(사후 승인 포함) 하에 체육관 등 임시 대피소(병설 기관 포함) 또는 대피기관(B)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으로 인정
 - (사례1) 피해기관(A)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피기관(B)은 임시로 장소만 제공한 경우, 피해기관(A)의 급여비용으로 인정
 - (사례2) 수급자를 완전 전원 조치하여 대피기관(B)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피기관(B)의 급여비용으로 인정

※ 다만, 피해기관의 복구기간이 길어져 임시대피 기간이 길어질 경우,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피해기관(A)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또는 대피기관(B)으로 완전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

3. 입소자 범위에 관한 특례

- (대상) 수급자를 전원 받은 대피기관(B)
- (내용) 완전 전원 개념으로 전원된 수급자는 대피기관(B)의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*을 위한 입소자 범위에서 제외
 - * 정원초과 감액,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등
- (제출서류) 지방자치단체의 전원조치로 대피기관(B)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*(공문 등)
 - * 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급자 명단 포함

4. 대피기관(B)에 대한 비용 지원

- (대상) 수급자를 전원 받은 대피기관(B)
- (내용) 재난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(A)의 수급자에게 대피 장소 등을 제공한 대피기관(B)에 대하여 비용 지원
- (기준) 5일*의 범위 내에서 전원받은 수급자 1인당 1일 17,000원 지급
 - * 5일 이내에 피해기관(A)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
- (청구) 청구 기간·방법·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
- (제출서류) 지방자치단체의 전원조치로 대피기관(B)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*(공문 등)
 - * 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급자 명단 포함

5.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

- (대상) 수해 등으로 이재민이 된 입소시설(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 종사자 및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 시설장, 사회복지사(가산 적용 대상)
- (내용)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종사자가 이재민이 되어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, 5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
- (제출서류)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(피해사실확인서 등)